일본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범위

정보신청기관: 공정거래위원회

T 서론

일본에는 종래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하 '저작권중개업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저작권에 대한 중개업무에 대하여 허가제," 사용료규정의 인가제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저작권중개업무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이 제정한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상의 관리사업자의 등록제도 및 약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하다.

II. 저작권중개업무법에서 저작권관리사 업법으로의 이행

1. 제도개정의 배경

종래의 저작권중개업무법은 소설, 각본, 음악의 3분야의 관리업무에 한정적이었으나 이를 확장할 필요성, 근년 저작권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 중 저작권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등을 위해 저작권법과는 별도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새로운 제도의 특징

(1) 종래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이행

새로운 관리사업을 행하려는 자에게 신규진 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래의 허가제에서 등 록제로 개정하였다. 등록제에 의하여 최저한의 적격사유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관



1) 중개업법에 근거하여 음악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소설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일본문예저작 권보호동맹], 각본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일본각본가연맹 및 협동조합 일본저널작가협회]의 4개 단체가 허가를 얻어 존재하고 있었다.

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은 저작권관리사업을 시장원리에 맡긴 것이다.

(2) 규제분야의 확대

종래의 저작권중개업무법은 소설, 각본, 음악의 3분야에 한정되었지만, 저작물등관리사업법은 여러 분야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효율적인 권리처리체제의 필요성이 있어, 전 분야의 저작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규제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저작인접권(실연, 레코드, 방송, 유선방송)에 관해서도 규제대상으로 하였다.

(3) 이용지측의 의견을 반영한 사용료규정의 정비

종래의 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용료의 원활 및 적정한 설정을 위해 이용자측의 의견을 반영하 는 기회를 주고, 사용료규정에 관한 협의·재정 제도를 정비하였다.

Ⅲ.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내용

1. 목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관리위탁계약약관 및 사용료 규정의 신고 및 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

물, 실연,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의 이용을 원활히 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제1조).

2. 용어의 정의

[관리위탁계약]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에 의한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 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의 허락에 있어서 위 탁자가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 한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인 접권을 이전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중개, 대리 및 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

[저작물관리사업]이라 함은 관리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관리를 행함에 있어 이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위탁관리사업자]란 등록을 받아 저작 권관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사업자의 등록제도

(1) 규제완화적 측면(등록제)

저작권관리사업을 행하려는 자는 문화청장관 의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제3조). 등록을 하기 위 해서는 명칭, 임원,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저 작물의 종류 및 이용방법, 그 밖의 문부과학성 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법령상 [등록]은 다의적이지만, 여기에 서의 등록은 그 성격상 [신고]와 [허가]의 중간적 위치에 존재하는 의미로 보여진다. 즉, 허가제 정도의 엄격한 심사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자격요건을 일응 증명한다면 업무개시를 인정해도 좋은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청장관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관리사업자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제5조).

등록거부사유에 관하여는 문화청장관은 등록 신청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 또는 등록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사실 의 기재불비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만 한 다(제6조).

- 법인이 아닌 자
- 다른 저작권관리사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한 명칭 또는 다른 저작권 관리사업자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
- 등록취소된자가 취소일부터 5년을 경과하 지않은 법인
- 본법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 금형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이 실효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법인
- 임원이 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자로서 복 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고 형의 집행 종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문부과학성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재산적 기초를 갖고 있지 않은 자

이러한 등록제도의 도입에 의해 동일분야의 저작권에 대해서 복수의 관리자가 존재할 수 있 으며 [경쟁원리]하에 관리사업자의 기능이나 제 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

(2) 규제적 측면(적용범위확대, 업무개선명령, 사용료규정의 협의·재정제도)

종래의 음악, 소설, 각본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분야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도 등 록제가 강요되는 면이 있다. 또한 문화청장관은 저작권관리사업자에게 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케 하고,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및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질문할 수 있 다(제19조). 그리하여 저작권사업자의 사업운영 에 관하여 위탁자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청장관은 위탁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에 필요한 한도 내에 서 당해 저작물관리사업자에게 관리위탁계약약 관 또는 사용료규정의 변경, 그밖에 업무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0 조). 또한 문화청장관은 저작권관리사업자가 부 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았거나 법인이 아니거 나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벌금의 형 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 할 수 있다(제21조).

4. 관리위탁계약약관. 사용료규정의 신고제도

저작권관리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관리위탁계약약관을 정하여 먼저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제11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 과리위탁계약의 종별
- 계약기간
- 수령한 저작물사용료의 분배방법
- 저작권관리사업자의 보수
- 기타 문부과학성령에 정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제12조), 사용료에 대해서도 문화청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제13조). 뿐만아니라 저작권관리사업자는 관리위탁계약약관및 사용료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제15조). 여기에서의 사용료는 상한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제13조 제4항). 그러나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용료를 정해도 공평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불공정한 차별취급 시에는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발생될수있다.

저작권관리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다(제16조).

5. 사용료규정에 관한 협의 및 재정

관리단체의 사용료 규정은 허가제로부터 신 고제로 이행이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자측의 의견반영 프로세스를 어떻게 확보 하는 가 여부이다.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은 이용 자측의 의견반영의 프로세스를 다단계로 확보 하고 있다.

문화청장관은 저작물의 이용자대표가 사용료 규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화청 장관은 이에 응하여 저작권관리사업자에게 협 의에 응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3조). 지정저작 권관리사업자는 당해 저작물의 이용구분에 있 어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관리사업자에 게 문화청장관이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이용자 와의 협의에 응할 의무를 특별히 과한 것으로 해 석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당사 자는 문화청장관에게 재정신청할 수 있고, 사용 료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재정이 있을 때 사용료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하고 있다 (제24조).

6.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기존의 저작권관리사업자가 신규 저작권관리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저작권자나 저작물이용자에게 부당히 차별적 취급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09년 2월 27일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대하여음악의 방송사용료의 정수방법에 문제가 있고,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7. 벌칙

문화청에 등록하지 않고 저작권관리사업을 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제29조), 저작권관리사업의 정지 현재 일본의 문화청에 등록된 저작권관리사 명령에 위반한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제30 업자는 아래 표와 같다. 2) 조) 각 처한다.

Ⅲ. 저작권관리사업자

등록번호	명 칭	분류	URL
제01001호	일반사단법인일본음악저작 권협회	음악저작물	http://www.jasrac.or.jp/
제01002호	사단법인일본문예가협회	언어저작물	http://www.bungeika.or.jp/
제01003호	협동조합일본각본가연맹	언어저작물	
제01004호	협동조합일본시나리오작가 협회	언어저작물	http://www.j-writersguild.org/
제01005호	주식회사이라이선스	음악저작물 레코드	http://www.elicense.co.jp/
제01006호	주식회사동경미술구락부	미술저작물	http://www.toobi.co.jp/
제01008호	사단법인복사권센타	언어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음악저작물 무용, 무언극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http://www.jrrc.or.jp/
제01009호	주식회사지적소유권협회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언어저작물	http://e-chiteki.com/
제01011호	주식회사재팬라이선스클리 언스	음악저작물 레코드	http://www.japanrights.com/
제02001호	일반사단법인일본레코드협회	레코드 언어저작물	
제02002호	다이키사운드주식회사	음악저작물 레코드	http://www.ds-copyright.jp/



²⁾ http://www.bunka.go.jp/ejigyou/script/dbipzenkensaku.asp

제02004호	일반사단법인학술저작권협회	언어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http://www.jaacc.jp/ http://wwwsoc.nii.ac.jp/jaacc
제02005호	사단법인일본예능실연가단체 협의회	실연	
제02006호	사단법인일본미술가연맹	미술저작물	
제02007호	주식회사미디어링크스재팬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언어저작물	http://www.medialynx.co.jp/
제02008호	주식회사미술저작권센터	미술저작물	http://www.art-copyright.jp/
제02010호	일반사단법인교학도서협회	언어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제02013호	유한회사코벳포토에이전시	사진저작물 언어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제02015호	주식회사아시아저작협회	음악저작물	http://www.asia-ca.com/
제02017호	유한책임중간법인미술저작 권협회	미술저작권	
제03005호	주식회사미연인터내셔널	미술저작물 언어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http://www.e-desighnshop.jp/ www_biken/
제03006호	주식회사리버럴에이전시	언어저작물	http://www.kagurazaka, org/libra/
제03007호	사단법인사립대학정보교육 협회	언어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영화저작물 사진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저작물	http://www.juce.jp/
제03010호	유한책임중간법인일본출판저 작권협회	언어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미술저작물	http://www.bunka.go.jp/ejigyou/script/ www.e-jpca.com

제04001호	일반사단법인출판물대여권관 리센터	언어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제05001호	주식회사인터내셔널카피라이 트어소시에이션	음악저작물 레코드	http://ica-j.com/
제05004호	주식회사일본유니에이전시	언어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제05005호	메키키크리에이트주식회사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http://www.mekikicreates.com/
제06001호	협동조합일본사진가유니온	사진저작물	http://pro-photo-union.jp/
제07001호	합동회사아이피플랜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언어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영화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http://www.ip-plan.com/index.html
제07002호	일반사단법인출판자저작권관 리기구	언어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편집저작물	http://jcopy.or.jp/
제08001호	주식회사아이씨에이전시	음악저작물 레코드 실연	http://www.icagency.net/
제08002호	코피라이트컨설턴드주식회사	미술저작물	http://www.copyrightconsulting.co.jp/
제09001호	주식회사에미션엔드레스	언어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영화저작물 사진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저작물	

제09002호	주식회사일본비쥬얼저작권 협회	언어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영화저작물 사진저작물	http://www.jvca.gr.jp/
제09003호	주식회사국제종합지재홀딩스	언어저작물 음악저작물 무용무언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용화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데이터베이스저작물 편집저작물 보연	http://www.wiph.co.jp/
제10001호	일반사단법인일본음악소프트 작사작곡협회	음악저작물 레코드	http://jacm.or.jp/

Ⅲ. 결론

현재 일본은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 실 시함으로써 종래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환 하여 관리사업자가 많이 등록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이용자와 권리자를 위한 서비스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성공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를 참고하여 발전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임 동 번

(외국법제조사위원)